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22호, 2026.5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행위

항 목 [㉮]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 [㉮]	비 고
	(편)	(부)								
도수치료	제7편	제2부	관리1가	도수치료[1일당]- 상급종합병원· 종합병원·병원	95%	2026-07-01	3년		2026-07-01	
			관리1나	도수치료[1일당]- 요양병원·정신병원						
			관리1다	도수치료[1일당]- 치과병원						
			관리1라	도수치료[1일당]- 한방병원						
			관리1마	도수치료[1일당]- 보건의료원						

항 목 제)	분 류		분 류 번 호	분 류 명	본 인 부 담 른	적 용 일	평 가 주 기	평 가 완 료 차 수	최 초 시 행 일 제)	비 고
	(편)	(부)								
			관 리 1 바	도 수 치 료 [1 일 당]- 의 원						
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

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.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				개정											
[별표 2의2] 1. 선별급여 가. 행위										[별표 2의2] 1. 선별급여 가. 행위											
항목 [㉮]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 률	적용 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 일 [㉮]	비고	항목 [㉮]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 률	적용 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 일 [㉮]	비고
	(장)	(절)										(편)	(부)								
<신설>										도수치료 제7편 제2부 관리1가 관리1나 관리1다 관리1라 관리1마 관리1바 도수치료1일당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 도수치료1일당-요양병원·정신병원 도수치료1일당-치과병원 도수치료1일당-한방병원 도수치료1일당-보건의료원 도수치료1일당-의원											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										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											